

#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서 정 두\*

- 
- I. 머리말
  - II. ISBP의 의의와 특징
    - 1. ISBP의 의의와 배경
    - 2. ISBP의 주요특징
  - III. ISBP의 효과와 문제점
    - 1. ISBP의 효과와 업계반응
    - 2. ISBP의 문제점과 미제
  - IV. UCP 600 작업의 주요쟁점
    - 1. UCP 600의 기본과제
    - 2. 신용장 본질과 의무조항
    - 3. 서류관련조항
    - 4. 잡칙과 양도조항
  - V. 맺음말
- 

## I. 머리말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라 함은 UCP(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에 관한 실무상의 보완서(practical complement)로서, 이는 2002년 10월 ICC(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말한다.<sup>64)</sup>

---

\* 호원대학교 교수

64)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 No. 645, 2003. 1, p. 3.

즉, ISBP는 UCP의 효력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일상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국제규칙이다. 이는 실무가들에게는 성문화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제공하여 하자서류의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신용장의 자문가나 연구가, 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ISBP와 UCP의 관계 속에서 ISBP의 의의와 제정배경을 개관하고, ISBP의 일반원칙과 대상서류별 주요내용을 요약하며, ISBP의 효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UCP 600의 주요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ISBP의 의의와 특징<sup>65)</sup>

### 1. ISBP의 의의와 배경

#### (1) ISBP와 UCP 500의 관계

ISBP는 UCP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는 중간과정이 아니라, UCP 500 제 13 조 a 항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한 것이다.

즉, ISBP는 장차 “UCP 600”(가칭)의 탄생에 도움이 될지언정, 이를 위한 잠정조치가 아니고 오랜 동안 축적된 국제표준관습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UCP 500 제 13 조 a 항에는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제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라는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ISBP는 UCP상의 일반원칙과 실무가들의 일상업무 사이에 부족한 공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SBP는 강행법규도 아니고 신용장에 별도조항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는 UCP에 준거하는 모든 신용장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결국 서류심사자들은 전세계의 다른 관습과 일치시켜 처음 서류를 제시할 때부터 하

65) 상세내용은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 20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pp. 317~338에 게재됨.

자사유로 인한 UNPAID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sup>66)</sup>

미주지역의 경우 1996년에 Kozolchik 교수(아리조나대학)의 주도로 IFSA (국제금융서비스협회: 당시 USCIB)에서 “SBPED”(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 신용장서류심사 표준은행 관습)를 제정하여 동 지역내의 신용장소송 건수를 크게 감소시킨 바 있으며,<sup>67)</sup> 또 SBPED는 이번 ISBP의 제정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 (2)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요건

신용장거래의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이란 용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계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서,<sup>68)</sup> 2002년 10월에 제정된 ISBP는 이들 용어를 종합 검토하여 그 제목부터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 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고 정하였다.

ISBP의 “국제표준은행관습”이란 UCP 500 제 13조 a항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UCP에 반영된 관습을 지칭한다. 문제는 UCP에 반영되지 아니한 관습을 배제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UCP 500과 SBPED를 주도한 Kozolchik 교수 등의 다수의견은 이를 확대 해석하는 입장이다.<sup>69)</sup>

즉, UCP 500의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이 서류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여기서 표준관습이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고,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준수되어 온 관습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당화할 수

66) Donald R. Smith,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 1.

67) Donald R. Smith,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pp. 3~4.

68) 1920 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 - “standard practice”; 1993 UCP 500 Art. 13(a)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1995 UCC Sec. 5-108(e) - “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199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 16(1) -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 of practice”; 1996 SBPED - “standard banking practice”; 1998 ISP98 Art. 4.01(b) - “standard standby practice” 등.

69) Paul Turner,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p. 12~13.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 정규적으로 준수되어 오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갖추고 있는 관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0)</sup>

② UCP에서는 “은행관습”(banking practice)을 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와 책임, 거래의 위험 및 신용장의 효용성 등에 대한 배분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71)</sup>

③ “UCP에 반영된”(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관습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UCP의 명시규정만을 가리킨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규칙에 조문화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준관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의미는 아직 조문화되지 아니한 국제표준관습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바람직하다.<sup>72)</sup>

이들 표준관습의 조문화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는데, 그 중심역할을 맡아 온 국제기구는 ICC이고 여기로부터 공표된 관련자료는 결과적으로 모두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주에 포함된다.

요컨대 국제표준은행관습을 형성하는 자료는 i) 현행 UCP의 본문조항, ii) UCP의 본문조항을 해설한 ICC 각종 공표물,<sup>73)</sup> iii)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과 의견 및 사례,<sup>74)</sup> iv) ICC와 제휴한 금융기관의 결정과 의견 및 공표물,<sup>75)</sup> v) ICC 신용장분쟁 전문가그룹의 의견규칙(DOCDEX)이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용장 논문자료(Articles) 등이 있다. 다만 UCP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목표에 부합되지 아니한 특정의 국내관습이나 지역관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sup>76)</sup>

70) “국제적”(international)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을 때를 말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은행지점간의 거래는 국제적이라고 본다.

71) Boris Kozolchyk,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1 No. 11 (1995), p. 32.

72)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p. 62.-

73) ICC,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and 400 Compared, Pub. No. 511 (1994);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Pub. No. 515 (1994) 등이 이에 해당한다.

74)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Pub. No. 434; *ibid.* (1987~1988), Pub. No. 469; *ibid.* (1989~1991), Pub. No. 494;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Pub. No. 459; *ibid.* (1991), Pub. No. 489;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1995), Pub. No. 535;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Pub. No. 632 등이 이에 해당한다.

75) 대표적으로 IFSA(구 USCIB)가 발행하는 “White Books”이 이에 해당하는 공표물이다.

76) J. E. Byrn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 (3) ISBP의 제정배경과 체계

1993년 UCP 500의 탄생은 세계적으로 신용장분쟁을 줄이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나, 이후에도 2000년까지 ICC 은행위원회에는 어떠한 경우에 국제표준은행관습이 적용되는지 등 600여개 이상의 교육질의가 쇄도하였다.<sup>77)</sup>

ICC 은행위원회는 2000년 5월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UCP 500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며, 이들 관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작업부를 설치하였다. 동 작업부는 Donald R. Smith(미국)와 Ole Malmqvist(덴마크)를 공동의장으로 위촉하고 James E. Byrne(미국) 등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ICC의 동 작업부는 우선 전세계의 신용장 실무가들이 사용하는 서류심사목록을 수집하기로 하고 ICC 각 국내위원회를 통하여 요청한 결과 45개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10대 연구과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ICC의 동 작업부는 각 국내위원회의 수집자료와 함께 ICC로부터 발표된 적용가능한 의견(Opinions), 결정(Decisions), 입장서(Position Papers) 등을 연결시키고자 그동안의 ICC 은행위원회 공식발행물과 심지어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가의견규칙)의 결정(Decisions) 등의 자료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요컨대 ISBP는 2000년 5월부터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 의하여 2년 6개월 동안 14차례의 작업부 회의와 4차례의 초안작업을 거쳐 200개 조항의 최종안이 완성되고 2002년 10월 30일의 ICC 은행위원회 로마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여 ICC의 공식문서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2003년 1월 1일부터 세계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있다.<sup>78)</sup>

ISBP의 구성체계는 UCP 500 제 20조~제 47조에 규정된 대상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 11장 91절 200개 조항의 서류심사목록으로 되어 있다.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p. 12.

77) Gary Collyer, "UCP 500 -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2003. 9, Session 2. 전체 질의의 58.6%가 제 13조, 제 14조, 제 21조, 제 23조 등에 집중되었다.

78) Donald R. Smith, op. cit., Vol. 8 No. 4, 2002.10-12, p. 23. 다만 2003년 6월에 ISBP 일부 조항의 사소한 표현이나 내용이 본 자료에 소개된 대로 수정된 바 있다.

즉, ISBP는 ① 예비적 고려(제 1 조~제 5 조), ② 일반원칙(제 6 조~제 44 조), ③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제 45 조~제 58 조), ④ 송장(제 59 조~제 72 조), ⑤ 해양/해상선화증권(항대항선적 적용)(제 73 조~제 99 조), ⑥ 용선계약부선화증권(제 100 조~제 119 조), ⑦ 복합운송서류(제 120 조~제 143 조), ⑧ 항공운송서류(제 144 조~제 169 조), ⑨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제 170 조~제 182 조), ⑩ 보험서류(제 183 조~제 195 조), ⑪ 원산지증명서(제 196 조~제 200 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 ISBP의 주요특징

### (1)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ISBP 제 1 조~제 5 조에는 신용장거래의 예비적 고려사항(preliminary considerations)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어 ISBP 제 6 조~제 44 조에는 UCP 500의 제 20 조~제 47 조에 따른 모든 대상서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특기할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약어(abbreviations)는 널리 인정된 것이라면 사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 필요한 약어의 누락이나 다른 약어의 사용은 하자가 될 수 있으며,<sup>79)</sup> 또 선택어(“/” 부호)는 단어의 대체어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제 6 조~제 7 조).

② 수익자 서류는 신용장 언어(language)로 작성하여야 하고, 복수의 언어를 허용한 신용장의 경우도 지정은행은 언어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sup>80)</sup>(제 26 조).

③ 서류의 단순한 오타자(misspelling)는 용인되지만, 제품번호나 중량 또는 당사자의 성씨를 잘못 기재하는 등은 하자가 된다<sup>81)</sup>(제 28 조).

79)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이하 “ICC Publication 632”라 한다), R. 186 and 116.

80) 신용장에서 특정의 언어(language)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서류는 어떠한 언어로 발행되더라도 이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ICC DCINSIGHT, Vol. 9 No. 2, 2003. 4-6, p. 12).

81) ICC Publication 632, R. 55;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89, 1991. 12 (이하 “ICC Publication 489”라 한다), Case No. 202.

④ 복수의 원본(original)으로 발행된 서류는 각각 “원본”, “부분” 등의 표기가 있거나 수기 또는 타자로 작성되어 있어야 원본으로 인정된다(제 31 조).

⑤ 서명(signature)은 환어음·증명서·신고서의 경우 필수이며, 운송·보험서류의 경우 UCP 요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방식은 다양하지만, 서명된 서류 일체의 사진복사나 팩스전송은 원본성을 상실한다<sup>82)</sup>(제 39 조~제 41 조).

### (2)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Draft & Maturity Date)

ISBP 제 45 조~제 58 조(14 개 조항)에는 환어음의 기한, 만기일 계산, 배서, 금액표시와 발행방법,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정정과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특기할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환어음은 일람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만기일의 확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기일에서의 “from”, “after” 등은 당해 일자를 제외하고,<sup>83)</sup> 하나의 B/L에 복수의 선적일자가 있으면 최초의 일자, 복수의 B/L이 제시되면 최후의 B/L 일자를 기준으로 만기일을 계산한다(제 45 조).

② 환어음의 만기일을 실제의 일자로 기재할 경우 신용장조건과 계산이 일치하여야 하며, 또 일람후 정기출급의 경우 지급인은행의 수령일자, 하자서류를 승인할 경우 인수일자를 각각 기산일로 한다<sup>84)</sup>(제 47 조~제 49 조).

### (3) 송장(Invoices)

ISBP 제 59 조~제 72 조(14 개 조항)에는 송장의 정의,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물품명세의 기재와 기타 송장에 관련된 일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특기할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에서의 “송장”(invoices)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송장을 포함하지만, 가송장이나 견적송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제외한다(제 59 조).

82) ICC Publication 632, R. 130, 132 and 293.

83) 다만 환어음 만기일에 사용되는 “from”(부터)은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UCP 500의 취지(제 47 조 a 항)와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R. 294)에 배치되는 것이다.

84) 하자서류를 승인할 경우도 환어음의 만기일은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ICC DCINSIGHT, Vol. 9 No. 2, 2003. 4-6, p. 11).

② 송장의 당사자는 신용장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의 팩스 번호 등이 불일치하거나 서명과 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국가명이 다를 정도의 주소표기는 하자가 된다<sup>85)</sup>(제 60 조~제 61 조).

③ 송장의 물품명세는 송장내용을 조합하여 일치하거나 추가된 설명이 있어도 되지만, 신용장에 요구되지 아니한 품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제 62 조).

####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ISBP 제 73 조~제 182 조(110 개 조항)에는 해상선화증권(marine B/L), 용선계약부 선화증권(charter party B/L), 복합운송서류(MTD), 항공운송서류(AWB 등), 도로/철도/내수로(road/rail/inland waterway) 운송서류 등이 각각 요구된 경우의 원본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항과 양륙항, 수화인과 송화인, 환적과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표시, 운임 등의 기재에 관련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특기할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상선화증권은 원본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되, “부분” 등의 표시가 있거나 “원본”이란 표시가 없어도 원본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sup>86)</sup>(제 75 조).

② 해상선화증권은 서명과 운송인의 명의를 필수이나, 운송주선인 선화증권이 허용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여도 된다<sup>87)</sup>(제 76 조~제 77 조).

③ 적재항과 양륙항은 해상운송을 커버하는 한, 수령장소란과 최종목적지란에 기재하여도 되지만, 실제의 항구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 80 조~제 83 조).

④ 선화증권상의 운임지급 여부와 추가비용 표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되,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후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sup>88)</sup>(제 98 조).

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경우 적재항과 양륙항이 지리적 구역(geographical area)으로 요구되어 있으면, 적재항은 실제의 항구명으로 기재하여야 하

85) ICC Publication 632, R. 223 and 229.

86) 예컨대 수기나 타자의 경우는 “원본”(original)이란 표시가 없어도 원본으로서 인정된다(ICC Publication 632, R. 127 and 292; 대판 2002.6.28 선고, 2000다63691).

87) 다만 운송주선인 선화증권의 경우도 UCP 500 제 23 조 a 항 i 호를 제외한 ii 호 내지 d 항의 나머지 수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ICC Publication 632, R. 161 and 157).

88) 다만 운임의 허용된 추가비용이나 금지된 추가비용인지의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만, 양륙항의 표시는 지리적 구역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sup>89)</sup>(제 106 조).

⑥ 복합운송서류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커버하는 한,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이란 제목이 없어도 UCP 500 제 26 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제 121 조).

⑦ 항공운송서류는 전통의 원본이 요구되었다더라도, 그 특성상 “송화인용 원본”(original for shipper)만으로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제 146 조).

⑧ 항공운송서류는 실제의 발송일자가 요구된 경우 그 발송일자를, 발송일자가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발행일자를 각각 선적일자로 보지만, 기타 항공기의 취항일자(flight date)는 고려되지 아니한다<sup>90)</sup>(제 149 조~제 151 조).

⑨ 항공운송서류의 공항명은 IATA에 등록된 약식코드로 기재할 수 있으나, 지리적 구역이 아닌 실제의 공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 152 조~제 153 조).

⑩ 항공운송서류상에 “선지급”(prepaid)과 “착불”(collect) 조항이 인쇄된 경우, 해당 공란에 금액만 기재하여도 신용장의 요구가 충족된다<sup>91)</sup>(제 169 조).

⑪ 육상운송서류는 “원본” 표시가 없어도 되나, 도로서류는 “송화인용” 사본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철도서류는 인증된 부분으로도 수리된다<sup>92)</sup>(제 171 조).

⑫ 육상운송서류는 운송인의 정의와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철도서류는 운송인의 정의 없이 출발역에서 수령일자의 타인만 있어도 된다(제 172 조).

#### (5)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ISBP 제 183 조~제 195 조(13 개 조항)에는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의 발행인, 담보위험, 일자, 부보금액, 피보험자와 배서 등의 수리요건에 관하여

89) ISBP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양륙항을 지리적 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용선운송계약이 정기선 해상운송계약과는 달리 주로 도착지역이 같은 방향의 화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ICC Publication 632, R. 168).

90) 항공운송서류상에 표시되는 항공기의 취항일자(flight date)나 취항번호(flight number)는 발송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타 취항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에서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91) 이는 항공운송서류가 다른 방식의 운송서류와는 달리 서류상에 운임부담금 “선지급”(prepaid)과 “착불”(collect)의 공란을 미리 인쇄하여 두는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92) 이는 도로운송서류의 경우 송화인용 사본(copy for shipper)이란 표시가 있거나, 또는 서류를 전달하는 상대방의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하며, 또 철도운송서류의 경우 철도회사의 인증이 있는 부분(탄소복사지 등)만으로도 원본으로서 수리된다는 의미이다.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특기할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의 필묵지로 발행된 서류의 경우, 보험자나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명되어 있으면 이는 수리될 수 있다(제 185 조).

② 보험서류는 동일한 피보험위험에 대하여는 단일의 서류에 담보되어 있어야 하며, 분할담보서류의 경우도 각 보험자의 공동책임 또는 주된 보험자의 전액담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수리될 수 있다<sup>93)</sup>(제 187 조).

③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최저부보금액의 지정이 없는 경우 CIF/CIP 가액의 110%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또 부보금액의 기준은 송장청구금액이 아닌 총 물품가액으로 하여야 한다<sup>94)</sup>(제 191 조와 제 193 조).

#### (6)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

ISBP 제 196 조~제 200 조(5 개 조항)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요구시 기본요건, 발행인, 물품명세, 수화인과 탁송인 등의 수리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특기할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의 증명문언이 있어야 하고(제 196 조), 발행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sup>95)</sup>(제 197 조).

②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consignee)은 운송서류와 모순이 없어야 하지만(제 199 조), 탁송인(consignor)이나 수출상의 기재는 신용장 수익자나 운송서류의 송화인과 서로 다른 당사자를 표시하여도 수리될 수 있다<sup>96)</sup>(제 200 조).

93) 분할담보(partial cover)의 경우 공동책임조항이나 전액담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ICC 의견서 등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인위적인 개념의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94) 신용장 통일규칙은 CIF/CIP 가액이 없는 경우 신용장 청구금액 또는 총송장금액의 110% 중에 보다 큰 금액을 최저부보금액으로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 34 조 f 항 ii 호).

95)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나 제 3국 통과시의 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발행인은 각국의 실정법에 따라 허용된 당사자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6) 예컨대 신용장 수익자가 이미 제조업자를 탁송인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경우, 선화증권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송화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Ⅲ. ISBP의 효과와 문제점

#### 1. ISBP의 효과와 업계반응

현행 UCP 500은 새로운 운송산업과 통신기술의 발달 및 하자서류의 증가추세에 대응하고자 1993년 5월에 탄생하였으나, 이후 오히려 “사소한”(minor) 성격의 서류하자 사유나 UCP의 명시규정과 “표준은행관습”(standard banking practice)의 해석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분쟁건수가 늘어났다.

ISBP는 신용장서류의 준비와 심사에 관련하여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신용장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입상의 경우, 신용장업무를 시작하고 거래조건을 약정할 때부터 ISBP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또 ISBP는 서류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어 온 많은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 줄 것이며, 나아가 ISBP는 신용장의 자문가, 연구가 또는 법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중요한 인용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SBP는 단순한 지침서(guideline)나 교육적 목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ISBP는 UCP의 본문에 근거하고 이와 관련한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으로부터 직접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장차 ISBP 관행을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특이한 행위를 하는 은행은 무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sup>97)</sup>

현재 ISBP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사소한 하자사유로 지급거절의 애로를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느낀 은행들이 많았으며, 이번에 제정된 ISBP 프로젝트는 사소한 유형의 많은 하자사유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7) Martin Shaw,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p. 13.

## 2. ISBP의 문제점과 미제

### (1) ISBP의 일부 문제점

ISBP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노력과 ICC 각 국내위원회의 의견 및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일부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① ISBP 제 26 조에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신용장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it is expected that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상의 언어를 필수로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서류의 언어에 대한 언급도 없다.<sup>98)</sup> 오늘날의 관습은 신용장에서 특정의 언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서류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하여도 수리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은 부적절하게 접근되어 있다.

② ISBP 제 22 조 b 항에 “stale documents acceptable”(기일경과서류)에 관한 개념정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ICC 은행위원회는 “stale”이란 용어를 이미 UCP 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신용장에서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ICC Publication 371, R. 54).

③ ISBP 제 45 조 d 항에서 “부터”(from)란 단어가 기한부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되면 “이후”(after)와 같이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UCP 500의 취지나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sup>99)</sup>

④ ISBP 제 98 조 등에서 신용장이 운임추가비용(costs additional to freight)을 금지하는 경우, 선화증권은 운임추가비용이 부과되었다거나 또는 부과될 것이라는 명시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서류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상의 비용기재가 허용된 추가비용인지 또는 금지된 추가비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⑤ ISBP 제 187 조에서 신용장의 보험담보는 명확한 분할담보의 보험서류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단일의 보험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98) René Müller, “The ISBP document, as it stands, does contain definitions that are contradictory to official Opinions”, *ibid.*, pp. 14~15.

99)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은 환어음의 매입기간과 관련하여 “이후”(after)는 당해 일자를 제외하는 반면에 “부터”(from)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ICC Publication 565, R. 294); UCP 500 제 47 조 a 항(선적기일 관련).

는데, “분할담보”(partial cover)에 관한 개념은 그동안 ICC 의견서에서도 전혀 제기되지 아니한 인위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 (2) ISBP의 향후과제

ISBP는 방대한 조항의 수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점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예컨대 송장에 서명과 일자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한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UCP 500 제 20 조 b 항과 원본서류의 인정문제 등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과제들이 많다.<sup>100)</sup>

즉, ISBP는 현행의 “표준”(standard)을 반영할 뿐이고 새로운 규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UCP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과제도 많다.

① “언어”(language)에 관한 문제이다(제 26 조). 이는 의견이 분분하여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즉, 서류는 영어로만 작성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어떠한 언어로 작성하여도 수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어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

② “화인”(shipping marks)에 관한 문제이다(제 36 조). 모든 서류상에 화인이 있어야 하는지, 화인과 그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어도 되는지, 서류상에는 화인과 모든 세부사항, 또는 화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③ 증명서(certificates)나 신고서에 서명과 일자가 모두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제 13 조와 제 39 조).

④ 송장(invoice)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에 관한 문제이다. 송장의 명칭과 주소의 모든 세부사항(전화번호 등)이 신용장과 일치하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또는 완전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⑤ 기타 과제로서 서류는 반드시 표제(title)가 있어야 하는지(제 43 조), “제 3자 서류”라고 할 때 두 당사자는 누구인지(제 22 조), 어떠한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예컨대 “/” 등(제 7 조)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나, 이들은 향후 UCP의 개정작업에서 분명히 할 문제이다.

100) Reinhard Längerich, “I am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I hope future users of the ISBP will be as well”,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pp. 15~16.

ISBP의 성공 여부는 ISBP 프로젝트의 참여은행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신용장 이용자들에게 UCP 500 조항만을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폭넓게 하자사유의 판단근거를 찾도록 설득해 나가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

## IV. UCP 600 작업의 주요쟁점

### 1. UCP 600의 기본과제

앞의 ISBP는 UCP 600의 작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UCP 개정논의는 대체로 신중론이 우세이지만,<sup>101)</sup> 이미 개정작업에 필요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2년)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본다.<sup>102)</sup>

UCP 개정작업은 ICC 은행위원회 산하의 초안그룹(Drafting Group, 10명)과 자문그룹(Consulting Group, 30명)(7월 뉴욕, 10월 프랑크푸르트, 12월 뉴델리 회의)에 의하여 개정시안이 마련되면(2004년 봄), ICC 각 국내위원회와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ICC 은행위원회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UCP 600의 기본과제는 i) UCP 500 이후의 종이서류(paper documents), 특히 운송서류에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ii) 전자식 신용장(electronic credit)과 그 서류제시에 관한 보칙("eUCP")을 반영하며, iii) UCP와 밀접하게 관련된 URR 525와 ISP98 등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규칙으로 변모하는 것이다.<sup>103)</sup>

① 종이서류에 관련한 쟁점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 최근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국제은행법률·관습협회 회의자료,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표준은행관습"(SBPED) 등을 활용하면 이들 쟁점에 관한 한 최상의 규칙이 도출될 것이다.

101) Boris Kozolchik, "Should UCP 500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No", *ibid.*, Vol. 5 No. 4, Autumn 1999, p. 3.

102) Nicole Keller, "The Shape of the New UCP", *ibid.*, Vol. 9 No. 3, 2003. 7-9, p. 4.

103)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 15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 2, pp. 112~113.

② 전자식 신용장규칙은 URGETS(전자무역결제 통일규칙), Bolero 규약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며, 최근 eUCP를 통하여 전자식 서류제시의 기본규칙을 이미 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될 것이다. 다만 전자식 신용장결제에 관한 각 국내법과의 조화를 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③ UCP상에 URR 525와 ISP98을 수용하거나 조화를 기하는 문제이다. UCP와 URR의 관계설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UCP와 ISP의 조화문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UCP는 선적서류, ISP는 불이행진술서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서류거래를 전제로 한 규칙이기 때문이다.<sup>104)</sup>

기타 UCP 600에서는 각국 제정법이나 판례법에 대한 저촉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ICC 각 국내위원회에 UCP 개정시안을 사전에 통지하여 국내법과의 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장거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기(fraud)에 관한 것인데, UCP 500은 사기서류의 은행면책(제 15조)과 문면상 일치하는 한 지급의무(제 13조 a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각국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특히 서류의 사기로 추정되는 강한 의혹이 있어도 신용장의 거래은행은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다.<sup>105)</sup>

## 2. 신용장 본질과 의무조항

### (1) UCP 총칙조항

① UCP 500 제 1 조에서 이 규칙은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규칙에는 보증신용장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나 그 적용이 부적절한 조항이 많이 있다.<sup>106)</sup>

104) Nicole Keller, *op. cit.*, p. 4; John Turnbull, "Co-Chair of the UCP Consulting Group speaks out",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p. 8.

105) Reinhard Längerich, "UCP should not deal with fraud. Right? Wrong", *ibid.*, Vol. 6 No. 3, Summer 2000, pp. 9~10.

106) UCP 500 제 23조~제 38조의 규정은 보증신용장에 전혀 적용할 수 없고, 동 제 17조, 제 19조, 제 21조, 제 41조, 제 43조 및 제 48조의 규정은 보증신용장에 부적절하다.

현재 UCP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ISP98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UCP 600에서는 i) 제 1 조에 ISP의 원용조항을 두거나, ii) 양도가능 신용장처럼 별도의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장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sup>107)</sup>

② UCP 500 제 4 조에서 은행은 기초거래의 입증서류만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기(fraud)의 경우 상환청구권(rights of recourse)이 인정되는지, 또 이 경우 정지명령(injunctions) 등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sup>108)</sup>

UCP 600에서 사기에의규칙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둔다면, 분쟁의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109)</sup> 물론 UCP는 국내법에 우선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UCP를 채택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기에의규칙의 도입에 관하여는 현재 ICC 내에서도 찬반론이 맞서고 있다.<sup>110)</sup>

## (2) 신용장의 형식조항

① UCP 500 제 6 조에서 신용장이 취소가능 여부의 구분이 없으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오늘날 취소가능 신용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관련조항은 존재가치가 없어져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UCP 500 제 9 조 a 항과 b 항 iii 호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 만기일의 기산점이 서류 수령일자부터인지 또는 서류심사후 인수일자부터인지 불분

107) Nicole Keller, op. cit., 4; John Turnbull, op. cit., p. 8. 심지어 1933년 제정되어 70년간 내려온 UCP의 체계를 21세기의 기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명칭을 “Uniform Rules for Documentary Credits”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Roger Graham, “What needs changing in the next UCP (1)”,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pp. 3-4).

108) 오원석, “회환신용장에서 사기제외법칙(Fraud Exception Rule)의 근거와 적용기준”, 한국수출보험협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 12, p. 159.

109) “(a) If a presentation is made that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but a required document i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or honor of the presentation would facilitate a material fraud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er or applicant : ... (2) the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r or dishonor the presentation in any other case.”(UCC Sec. 5-109); Xiang Gao,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Kluwer Law Int'l, 2002, p. 57.

110) Affirmative positions on incorporating the fraud rule - Reinhard Längerich (op. cit., Vol. 6 No. 3, Summer 2000, pp. 9-10), Gary Collyer (op. cit., Session 1), Xiang Gao (ibid., p. 57); Negative positions on that - John Turnbull (op. cit., p. 8).



명하며, 또 동조 d 항 iii 호에서 수익자는 신용장변경의 동의 여부를 서류제출 시까지 유보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i) 기한부 환어음의 만기일은 ISBP 규정을 수용하여 일람후 정기출급의 경우 서류 수령일자부터, 하자서류의 경우 그 인수일자부터 각각 기산하도록 하는 방안(제 48 조), 또 ii) 신용장변경의 동의기한 문제는 “ICC 입장서 제 1 호”(ICC Position Paper No.1)의 해석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UCP 600에서는 신용장변경의 동의표시는 명시적으로 하고, 일정기한의 통고 후 단순한 침묵은 변경의 동의로 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UCP 500 제 10 조 b 항에서 매입이란 “가액을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이라고만 하여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즉시 지급 이행하거나 지급의무를 약정하는 것”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11)</sup>

### (3) 은행의 의무조항

① UCP 500 제 13 조 a 항에서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르도록 선언하고, 동조 b 항에서 서류심사기간은 수령 후 제 7 은행영업일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UCP 600에서는 ICC 은행위원회가 최근 제정한 ISBP의 상당부분을 UCP 본문에 수용하고, 기타 원용규정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더 단축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② UCP 500 제 13 조 c 항에서 신용장의 요구서류에 열거되지 아니한 서류 관련조건, 소위 “서류 없는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은 무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 없는 조건의 해석에 대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서류를 전제한 신용장의 본질을 벗어나 서류 없는 조건을 삽입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물품의 원산

111) “Giving of value” ... may be interpreted as either making immediate payment (e.g. by cash, by cheque, by remittance through a Clearing System or by credit to an account) or undertaking an obligation to make payment (other than giving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or accepting a draft)(ICC Position Paper No. 2).

지(origin)가 독일이어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있으나, 원산지증명서(C/O)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이 조건은 “서류 없는 조건”으로 보고 무시하여야 한다.<sup>112)</sup>

따라서 UCP 600에서는 “서류 없는 조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신용장의 요구서류에 없는 서류관련조건”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UCP 500 제 14 조 c 항에서 개설은행은 독자적으로 개설의뢰인과 하자서류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d 항에서 서류를 거절할 경우 모든 하자사항을 1 회에 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sup>113)</sup>

즉, 개설의뢰인이 하자서류를 용인할 경우, 개설은행은 반드시 지급이행하여야 하는지, 또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하자 통지한 후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유출한 경우의 책임문제, 그리고 서류심사기간내인 경우도 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을 1 회에 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④ UCP 500 제 19 조는 지정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제 3의 보상은행에게 청구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으로서, UCP 600에서는 URR 525의 내용을 수용·개선하고, UCP 신용장은 모두 URR의 적용이 가능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sup>114)</sup>

### 3. 서류관련조항

#### (1) 서류일반조항

① UCP 500 제 20 조 b 항과 c 항에서 서류의 원본성(originality)과 서명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는 반드시 “원본”의 표기가 있어야 하는지, 또 모든 서류에 서명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는 ICC 은행위원회의 “UCP 제 20 조 b 항 ‘원본’ 서류의 결정”(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sub-Article 20 (b))<sup>115)</sup>(1999. 7)과 ISBP(2002. 10)를 통하여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sup>116)</sup>

112) ICC Position Paper No. 3; UCP 500 & UCP 400 Compared, Pub. No. 511, 1994, p. 42.

113) Gary Collyer, op. cit., Session 1.

114) Nicole Keller, op. cit., p. 4; John Turnbull, op. cit., p. 7.

즉, UCP 600에서는 “원본”의 표기가 없더라도 “부분”(duplicate) 등의 표기가 있거나 수기(handwriting)나 타자(typing)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으로서 인정하고, 또 서명방법은 다양하게 허용하되 서명된 일체의 사진복사(photocopy)나 팩스전송(telefax)은 원본성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UCP 500 제 22 조에는 신용장일자 이전의 서류도 수리하도록 하면서, 모든 서류가 반드시 선적일자 이전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는지는 불명확하다.

UCP 600에서는 모든 서류는 선적일자 이후에 발행하여도 되지만, 선적전사실의 입증은 선적일자 이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면 명확할 것이다.<sup>117)</sup>

## (2) 운송서류조항

① UCP 500 제 23 조 a 항 i 호에 따르면, 선화증권은 운송인(carrier)의 명의가 있어야 하고, 운송인·선장이나 그 대리인에 의한 서명(signature)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조항에 관한 해석의 상당한 혼란이 있다.

UCP 600에서는 “ICC 입장서 제 4 호”(ICC Position Paper No. 4)와 ISBP 규정을 반영하여 선화증권상의 서명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선화증권은 반드시 i) 운송인의 명의로 서명을 기본으로 하되,<sup>118)</sup> ii)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운송인의 명의를 있고, iii) 선장이 서명하는 경우, “선장”의 자격(명의를 불요)을 명시하고, iv)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선장의 명의를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119)</sup>

② UCP 500 제 23 조 a 항 ii 호에는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의 인쇄가 있는

115)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sub-Article 20(b)” → 1. Background, 2. Determination of originality, 3. Correct interpretation of sub-article 20(b), 4. What is not an “Original”?, 5. Conclusion.

116) ISBP 제 31 조와 제 41 조; ICC Publication 632, R. 102, 127 and 292, R. 132 and 293.

117) ISBP 제 14 조; ICC Publication 632, R. 86 and 214; Publication 535, Case No. 21.

118) 운송인의 명의로는 반드시 선화증권의 전면에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서명란에는 다시 “운송인”이란 표기 없이 서명만 있으면 충분하다(ICC Position Paper No. 4).

119) ISBP 제 76 조; ICC Publication 632, R. 158. B/L 상에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도, “선장”의 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T.O. Lee, “What needs changing in the next UCP (2)”,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p. 3).

경우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미 본선적재의 인쇄가 있는데 별도의 일부된 본선적재 표기를 한 경우의 언급은 없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본선적재 표기일자를 선적일자로 보도록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UCP 500 제 23 조 a 항에는 신용장상에 해상선화증권의 요구가 있고, “운송주선인 선화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Forwarder’s B/L acceptable)라는 등의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의 유효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sup>120)</sup>

UCP 600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명의 없이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한 선화증권도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장이 FBL의 제시를 허용한 경우도, 해상선화증권으로서 수리되기 위하여는 동조 a 항 ii 호 내지 d 항의 나머지 수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sup>121)</sup>

④ UCP 500 제 25 조 a 항 v 호에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경우 양륙항을 실제의 항구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선운송이 일정 도착지역의 화물을 모집 운반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신용장이 양륙항을 일정지역(geographical area)으로 제시할 경우, 동 선화증권상에도 양륙항을 일정지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22)</sup>

⑤ UCP 500 제 30 조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도 운송인·복합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서명한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UCP 운송조항(제 23 조~제 29 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UCP 600에서는 각 운송서류요건에 대한 인용이 필요하다.<sup>123)</sup>

⑥ UCP 500 제 32 조 a 항은 무고장 선화증권을 정의하고 있으나, 신용장이 무고장 선화증권을 요구하였는데 선화증권상에 “무고장”(clean)의 표식이 없는 경우, 또는 운송인이 선화증권상에 인쇄된 “무고장 본선적재”의 단어를 삭제 인증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에도 ISBP 규정을 반영하여 고장부서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이 바람직하다.<sup>124)</sup>

120) UCP 500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air waybill)가 요구되고, “혼재업자용 항공화물운송장도 수리될 수 있다.”(house air waybill acceptable)라는 등의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ISBP 제 148 조 참조).

121) ISBP 제 77 조; ICC Publication 632, R. 161 and 157.

122) ISBP 제 106 조; ICC Publication 632, R. 168.

123) Gary Collyer, op. cit., Session 1.

## (3) 기타서류조항

① UCP 500 제 34 조 e항에 따르면, 보험서류 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도 선적일자로부터 담보된다는 표시가 있을 경우 수리가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험서류가 선박명, 적재항과 양륙항 및 선적기일내의 출항일자를 명기한 경우도 수리가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다.<sup>125)</sup>

UCP 600에서는 ISBP와 ICC 공식의견을 반영하여 선적일자보다 늦은 보험서류의 경우 소급보험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고, 선박의 출항일자(sailing date)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UCP 500 제 34 조 f항은 보험서류의 부보금액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금액(maximum amount)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신용장이 “110% 보험”(for 110%)을 요구한 경우 그 이상의 부보도 가능한지 언급이 없다.

UCP 600에서는 ISBP와 ICC 공식의견을 반영하여 부보의 최대백분율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또 신용장에서 “110% 보험” 등의 표현은 숫자의 제한이 없는 한 부보의 최소금액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다.<sup>126)</sup>

③ UCP 500 제 35 조~제 36 조(보험담보)에는 신용장에 담보위험의 특징이 없고 보험서류상에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또 “전위험”(all risks) 조건과 ICC (A) 조건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담보위험의 특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ICC (A) 조건서류도 “전위험” 담보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sup>127)</sup>

④ UCP 500 제 37 조 b항에는 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업송장의 단가와 통화단위, 신용장에 없는 선수금의 공제액, 부대비용의 기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sup>128)</sup>

UCP 600에서는 ISBP와 ICC 공식의견을 반영하여 송장금액의 수리적 계산(calculations)은 은행의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되, 상업송장의 물품단가와 통화

124) ISBP 제 91 조와 제 92 조; ICC Publication 632, R. 119; Publication 459, Case No. 122.

125) ISBP 제 189 조; ICC Publication 632, R. 214 and 216.

126) ISBP 제 191 조; ICC Publication 632, R. 216 and 289.

127) ISBP 제 186 조; ICC Publication 632, R. 218 and 219.

128) ISBP 제 64 조; ICC Publication 489, Case No. 259; Publication 632, R. 224.

단위는 신용장과 일치하게 하고, 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기타 명목의 증감금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29)</sup>

⑤ UCP 500 제 37 조 c 항에 따르면, 송장명세는 신용장명세와 일치하여야 하고 기타 서류의 물품명세는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용어로 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송장명세가 신용장과 완전일치하여야 하는지, 또 기타 서류의 물품명세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고 있는지 불명확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sup>130)</sup>

UCP 600에서는 ISBP와 ICC 공식의견을 반영하여 송장명세는 완전일치보다 송장 내의 여러 세부사항을 조합·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서류의 물품명세도 신용장 내지 송장과 모순되거나 송장에도 없는 물품명세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반용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sup>131)</sup>

#### 4. 잡칙과 양도조항

① UCP 500 제 40 조 b 항에는 동일한 운송수단과 항해일정으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는 한 선적일자나 적재항이 다르더라도 이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 분할선적의 개념정의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UCP 600에서는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란 물품을 둘 이상의 단위로 분리하여, i) 복수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트럭(로리), 기차 등)에 적재하거나, 또는 ii) 동일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되 항해일정이 다른 경우라는 등의 정의를 두고, 분할선적 금지의 경우 수리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32)</sup>

② UCP 500 제 41 조에는 “할부”(instalment) 선적/어음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할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할부 “등”(and the like)이라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UCP 500 제 45 조에는 은행의 영업시간(banking hours) 이외에 제시된

129) Ibid.; ISBP 제 27 조; UCP 500 제 15 조; ICC Publication 632, R. 20.

130) ICC Publication 632, R. 222, 228, 230 and 234.

131) ISBP 제 62 조; ICC Publication 459, Case No. 132; Publication 632, R. 220 and 227.

132) ISBP 제 89 조, 제 110 조, 제 132 조, 제 158 조, 제 177 조; Gary Collyer, op. cit., Session 1.

서류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영업시간 이외에 서명·제시된 서류, 특히 전자문서(electronic record)의 제시를 수리할 때 어느 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법은 자정시간(midnight deadline)을 기준으로 서류의 제시일자가 결정되며, 또 eUCP는 은행이 업무 중에 시스템상 전자문서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최초의 은행영업일까지 제시기일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sup>133)</sup>

④ UCP 500 제 46 조 b 항에는 선적일자와 관련하여 “신속히”(prompt), “즉시”(immediately)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UCP 600에서는 ISBP 규정(제 23 조)을 반영하여 “신속히”, “즉시” 등의 표현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in any context)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⑤ UCP 500 제 47 조 a 항에는 선적기간과 관련한 “부터”(from) 등의 용어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가 환어음 만기일의 계산에도 적용되는지 언급이 없고, 그 취지도 ISBP와 다르다.

UCP 600에서는 “부터”, “이후” 등의 용어가 선적일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사용될 경우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ICC 의견과 ISBP 규정을 고려하여 당해 일자의 포함 여부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34)</sup>

⑥ UCP 500 제 48 조에는 i) 양도가능 신용장은 반드시 양도은행을 명시하여야 하고(제 a 항), ii) 양도된 신용장은 UCP 제 48 조 h 항에 열거된 조건 이외에 원신용장의 조건을 벗어날 수 없으며(제 h 항), iii) 제 1 수익자는 제 2 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을 자신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i 항).

그러나 양도가능 신용장상에 복수의 양도은행을 명시할 수 있는지, 신용장은 결코 UCP 제 48 조 h 항의 열거조건 이상으로 변경될 수 없는지, 제 1 수익자는 송장과 환어음 이외의 서류도 대체 발행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UCP 600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33) UCC 제 5-110 조 b 항과 제 4-104 조; eUCP 제 e5 조 e 항.

134) “부터”(from)란 단어가 환어음 만기일을 확정하는데 사용되면 ... 당해 일자는 제외한다(ISBP 제 45 조 d 항). “이내”(within)란 용어가 어느 일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면 ... 당해 일자는 제외한다(ISBP 제 18 조).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입장은 환어음의 매입기간과 관련한 “부터”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ICC Publication 565, R. 294).

요컨대 신용장제도는 최근 세계시장에서 하자사유(discrepancies)의 증가나 사기(fraud), 대체수단(신용보험, 전자결제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장제도가 계속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ICC는 UCP 개정작업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sup>135)</sup>

## V. 맺음말

현실적으로 국내수출기업의 경우, L/C 선적 후 수입국에서 서류하자로 인한 UNPAID 통지를 받고 수출보험에 의존하는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ISBP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목전의 UNPAID 사고를 줄이고, 향후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한 UCP 600의 작업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며, 또 이미 진행 중인 UCP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내의견과 실무관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금융계의 새로운 표준관습을 주도하기 위하여는 국제신용장관습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ISBP에 관하여는 무역업체나 국내은행의 접근정도를 점검하고, 국제표준과 국내관습(local practice)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신용장 실무자들에게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나아가 대상서류별로 ISBP, UCP 500, ICC의 Opinions, Decisions, Position Papers, DOCDEX 의견,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거한 “e-Nego”(가칭)의 콘텐츠를 탑재한 서류심사용 소프트웨어(Software)를 개발하여 간단한 항목별 클릭만으로 무역서류심사를 자동 수행할 수 있는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하자사유와 UNPAID 위험을 제거하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논자는 향후과제로 무역현장에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기의 관련 국제법규 등을 기초로 하여 “e-Nego”의 콘텐츠를 탑재한

---

135) Mark Ford, “Facing up to L/C Competition”,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pp. 22~23; DC-PRO, “Suprising Results in Trade Finance Survey”, *ibid.*, Vol. 9 No. 3, 2003. 7-9, p. 2.



서류심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콘텐츠를 작성하는 기초단계에 있다.

“e-Nego” 시스템, 즉 자동 서류심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제는 금융기관이나 KTFNET 등과 산·학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제공과 프로그래밍을 분담할 계획이며, 연구결과가 국내의 외국환업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영문판으로 변환·특허출원하고 IFSA의 「White Books」 등에 발표할 예정이다.

## 參 考 文 獻

- 양영환 · 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 양영환 · 오원석 · 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3.
-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 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 11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 15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 2.
-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 20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 서정두, “ICC/ISBP의 일반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수출보험학회, 2003. 12.
- 오원석, “화환신용장에서 사기제외법칙(Fraud Exception Rule)의 근거와 적용 기준”, 한국수출보험학회, 2003. 12.
- Byrne, James E., “UCP 500 Explored :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 Collyer, Gary, “UCP 500 -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Hilton, September 3, 2003.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ised Edition, Warren · Gorham · Lamont, 1996.
- Ford, Mark, “Facing up to L/C Competition”,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 Gao, Xiang,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 Graham, Roger, “What needs changing in the next UCP (1)”,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ICC Publication No. 459 ;  
ibid. (1991), ICC Publication No. 489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1995), ICC Publication No. 535.

- ICC,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and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 511 (1994).
-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ICC Publication No. 515 (1994).
-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UCP 400, URC 522 & URDG 458,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1.
-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8~1999), ICC Publication No. 613, 2000. 6.
- Keller, Nicole, "The Shape of the New UCP", ICC DCINSIGHT, Vol. 9 No. 3, 2003. 7-9.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1 No. 11 (1995).
- Kozolchyk, Boris, "Should UCP 500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No",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5 No. 4, Autumn 1999.
- Lee, T.O., "What needs changing in the next UCP (2)",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 Längerich, Reinhard, "I am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I hope future users of the ISBP will be as well",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 Längerich, Reinhard, "UCP should not deal with fraud. Right? Wrong",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 Müller, René, "The ISBP document, as it stands, does contain definitions that are contradictory to official Opinions",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 Shaw, Martin,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 Smith, Donald R.,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 Smith, Donald R.,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 Turnbull, John, "Co-Chair of the UCP Consulting Group speaks out", ICC DCINSIGHT, Vol. 9 No. 4, 2003. 10-12.

134 「貿易商務研究」第22卷(2004. 2), 第1編 國際貿易決済

Turner, Pau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ABSTRACT

**The ISBP's Characteristic and its Some Problems, and the  
Main Agenda of the UCP 600**

Seo, Jung Doo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ISBP) is the product by the ICC Banking Commission, October 2002.

The ISBP is a practical complement to UCP 500, ICC's universally u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It explains, in explicit detail, how the rules are to be applied on a day-to-day basis. It fills a needed gap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announced in the rules and the daily work of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

By using the ISBP, document checkers can bring their practices in line with those followed by their colleagues worldwide. The result should b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documents refused for discrepancies on first presentation.

We are convinced that the benefits of the ISBP will not only be of high importance for users of UCP 500, but also that the practices in the ISBP will survive a UCP revision, or will even be included in the next version of the rule (so call "UCP 600").

Though the above-mentioned benefits of the ISBP, there are several troublesome topics that will probably have to wait for a new UCP revision. It will be a challenge for the drafters of a future UCP to find solutions that will further clarify these points.

Key words : ISBP, Letters of Credi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UCP 600
---